

第1項과 施行令 第5條에 規定한 支給額을 限度로 합니다.

第4條(補償하지 아니하는 損害) 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損害에 對하여 補償하는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1. 被害者의 故意 重大한 過失 또는 法令違反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로서 被害者 本人에 對하여 負擔하여야 할 損害.
2. 戰爭 暴動 및 그 밖의 事變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3. 地震 혹은 이들에 類似한 天災地變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4. 原子力 放射線照射 또는 放射能汚染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第5條(被保險者의 權利義務의 承繼) 特殊建物이 讓渡된 境遇에 讓受人 또는 그 指定하는 者가 被保險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하는 것을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와 約定한 것이 證明된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義務가 讓受人에게 承繼된 것으로 봅니다.

第6條(事故의 發生) ①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事故 또는 損害가 發生한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의 事項을 履行하여야 합니다.

1. 事故發生口時, 場所, 被害者의 住所, 姓名, 事故의 狀況 및 이들의 事項의 證人이 될 者가 있을 때는 그 住所, 姓名을 또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았을 때는 그 內容을 遲滯없이 書面으로 會社에 通知하는 일.
2. 他人으로부터 損害의 賠償을 받을 수 있을 境遇에 있어서는 權利의 保全 또는 行使에 對하여 必要한 節次를 밟을 것이며 損害의 防止 또는 輕減을 爲한 必要한 一切의 方法을 講究하는 일.

3. 損害賠償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會社의 承認을 받을 일. 그러나 被害者에 對한 應急手段 또는 護送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4.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損害賠償責任에 關한 訴訟을 提起하고 또는 提起되었을 때에는 即時 會社에 通知할 일.

②會社가 被保險者에 對하여 損害를 補償하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前項 各號의 義務를 違反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會社는 第4號의 境遇에는 損害補償額의 全額, 第2號의 境遇에는 防止 輕減할 수 있었다고 認定되는 損害額, 第3號의 境遇에는 會社가 損害賠償責任이 없다고 認定되는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7條(會社에 依한 解決) ①被保險者가 被害者로 부터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았을 境遇에 있어서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保險者에 代身하여 自己費用으로 解決을 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에 있어 被保險者는 會社가 要求하는 모든 일에 協力하여야 합니다.

②被保險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前項의 要求에 協力하지 아니할 때는 被保險者에 對하여 會社는 그 補償金 相當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8條(保險金 請求의 節次) ①被保險者 또는 被害者가 이 保險契約에 依하여 補償을 받고자 할 때는 被保險者와 被害者間에 第3條 第1項에 規定하는 損害額이 確定된 날로부터 30日 以內 또는

會社가 書面으로 承認한 猶豫期間안에 施行令 第6條에 依한 保險金 請求書, 保險證券 其他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書類를 提出하여야 합니다.

②前項의 書類에 故意로 不實한 內容을 表示하고 或은 事實을 隱蔽하였을 때 또는 그 書類 或은 證據를 偽造하고 或은 變造하였음을 안 때에는 被保險者에 對하여 그 補償金 相當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9條(保險金의 支給) 會社는 被保險者 또는 被害者가 前條의 節次를 마친 날로부터 5日 以內에 保險金을 支給합니다. 그러나 會社가 이 期間에 必要한 調査를 終了하지 못한 때는 이를 終了한 後 遲滯없이 保險金을 支給합니다.

第10條(保險金의 分擔) 同一한 事故로 因하여 第1條에 定한 被保險者가 둘 以上 있을 境遇에는 第3條에 定한 金額을 分擔하여 支給합니다.

第11條(그밖의 事項) 이 特約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이 特約規定에 反하지 않으면 火災保險 普通保險約款의 諸規定을 準用합니다.

風水災危險擔保特約條項

第1條(補償하는 損害) ①우리會社는 이 特約에 따라 火災保險普通保險約款(以下 「普通約款」이라 함) 第1條 第1項에 規定한 火災로 因한 損害외에 颱風·旋風·暴風·暴風雨·洪水·高潮 등의 風災 또는 水災로 因하여 保險의 目的에 생긴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을 집니다.

②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會社는

損害防止 또는 緊急避難에 必要한 措置로 因하여 保險의 目的에 생긴 損害로 補償하는 責任을 집니다.

第2條(補償하지 아니하는 損害)

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損害는 補償하는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1. 風災 또는 水災가 일어 났을 때 保險目的의 紛失 또는 盜難으로 因하여 생긴 被害.
2. 原因의 直接·間接에 關係없이 風災 또는 水災로 因하여 생긴 破裂 또는 爆發의 損害.
3. 原因의 直接·間接에 關係없이 地震 또는 噴災로 因하여 생긴 損害.
4. 댐 또는 堤防의 決壊로 因하여 생긴 損害. 그러나 決壊가 第1條에 揭載한 危險의 發生으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합니다.
5. 바람(風), 비(雨), 눈(雪), 우박 또는 砂塵이 물아쳐 들어 오거나 새어 들어 오므로써 생긴 損害. 그러나 保險의 目的인 建物 또는 保險의 目的을 收容하는 建물이 風災 또는 水災로 因하여 直接破損되었기 때문에 생긴 保險의 目的인 建物 内部 또는 收容品에 생긴 損害는 그러 하지 아니 합니다.
6. 凍氣, 霜(霜), 어름(氷), 눈(雪)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

第3條(保險의 目的의 範圍) 看板·廣告者·遮陽·「네온싸인」裝置 其他 이와 類似한 屋外 附屬設備는

保險證券에 明記하지 아니하면 保險의 目的이 包含되지 아니 합니다.

第4條(小損害不擔保) ①會社는 1개의 保險金額으로 付保되어 있는 保險의 目的마다 그 損害額에서 保險의 目的의 價額의 2%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하고 그 超過額에 對하여서만 第1條의 責任을 집니다.

②2個以上の 建物內의 收容品에 對하여 1個의 保險金額으로 付保되었을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은 各建物の 每收容品마다 이를 適用합니다.

③前2項에 依하여 控除되는 金額이 1萬원 未滿인 境遇에는 이를 1萬원으로 하고 10萬원을 超過할 境遇에는 이를 10萬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風災危險만을 擔保할 境遇에는 5萬원을 超過할때 이를 5萬원으로 합니다.

④前 各項의 規定에 依하여 各各 控除되는 金額의 合計額(但 損害額이 1萬원 以下의 것의 控除額은 이를 除外하고 計算함)이 1回의 事故에 對하여 1構內에 있어서 50萬원을 超過할 境遇의 控除額은 50萬원을 限度로 합니다.

第5條(用語의 代替) 이 特約의 適用에 있어서는 普通約款 第7條 第2號의 規定中 「火災가 發生하였거나 火災의 原因이 생긴」이라 함을 「이 特約條項 第1條의 損害를 입거나 風災 또는 水災의 原因이 생긴」으로 第6條 第1號의 「이 契約以外에 다른 契約」이라

함을 「風水災危險擔保特約條項付 火災保險契約외에 다른 風災 또는 水災危險을 擔保하는 契約」으로 第11條의 規定中 「火災」를 「風災 또는 水災」로 各各 代替합니다.

水災危險不擔保特約條項

會社는 風水災危險擔保特約條項 第1條 損害中 洪水·高潮 等의 水災에 依하거나 또는 이들 水災의 損害防止와 緊急避難에 必要한 措置로 因하여 保險의 目的에 생긴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을 지지 아니 합니다.

風災危險不擔保特約條項

會社는 風水災危險擔保特約條項 第1條의 損害中 颶風·旋風·暴風 雨 等의 風災에 依하거나 또는 이들 風災의 損害防止와 緊急避難에 必要한 措置로 因하여 保險의 目的에 생긴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을 지지 아니 합니다.

「네온싸인」裝置風災危險 電氣特約

會社는 風災의 直接 間接에 關係없이 保險의 目的에 電氣의 事故로 因하여 생긴 損害 및 電飾電球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을 지지 아니 합니다.